제27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 위탁 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1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화곡본동, 방화2동) 위탁 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9월 15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0 - 76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0년 8월 19일

라. 회부일자: 2020년 9월 9일

2. 제안이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기관인 화곡본동, 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비고
화곡본동 키움센터	까치산로6길 49, 1층	133㎡(40평)	민간 임차 건물
방화2동 키움센터	양천로 14나길 26, 1층	267㎡(80평)	공공건물 (기부채납)

○ 위탁사무 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평가, 모니터링 등
-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돌봄 관련 강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위탁기간: 2020. 12. ~ 2025. 1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소요예산: 총 1,579,717천원 / 5년

(국비:196,575천원, 시비:1,297,742천원, 구비:85,400천원)

나. 추진일정

○ 2020. 9월: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10월: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

○ 2020. 11월: 시설 설치 준공

○ 2020. 12월: 시설 개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개소예정인 화곡본동·방화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8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심의완료 하였음

○ 검토 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등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운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한 위탁체를 선정,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돌봄 수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돌봄 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

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 청소년 · 아동 · 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노인 ·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 ·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교통,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문화 · 예술 · 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노동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육 · 교양 · 체육 · 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4.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과장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부서 담당 주사가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